

분류기호 문서번호	국무총리지시 제2호	기 안 용 지 (전화 : 720-4436)		시 행 산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총 무 처 장 관	국 무 총 리		
수신처 보존기간					
시작일자	'87. 7.	1603	5/24		
보 조 기 관	차 판 감사판 담당판	협 조 기 관	기획관리실장	문서통 제	
			김명식	2/17	
발 송 인					
경 유 수 신 참 조	(제1안) 수신처 참조	발 신 명 의	국 무 총 리		
제 목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 강화 지시				
<p>금번 태풍과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복구,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 중앙행 정기관은 물론 소속 기관과 산하단체에도 시달하여 공직자의 비상근무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1. 비상근무조 편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수재와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 조치 					

완료 시 까지

○ 인원편성 : 부처판단,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원

○ 근무장소 : 상황실등 일정장소 지정

○ 소속·산하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자체

판단·운영

2. 공무원 특별휴가 우선 실시

○ 대상 : 수해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

○ 기간 : 기관장 판단, 응급복구 지원에 필요

한 기간

3. 공무원 하계휴가 실시 억제

- 응급복구 완료 시 까지 -

○ 수해복구와 직접 관련된 부처는 전직원 휴가

중지

○ 기타부처는 과장급 이상 휴가중지, 일반직원은

소속 기관장 판단하에 실시

4. 당직근무 강화

○ 청사 및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경계강화

◦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제 유지 철저. 끝.

수신처 : 가(05 ~ 53, 60, 61), 나(01).

(제 2 안)

복 무 01130 - 591

수 신 수신처참조 발 신 : 총무처장관

제 목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 강화지시 통보

태풍과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공직자 비상근무 태세 강화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별첨과 같이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무원비상근무 태세 강화지시 (국무총리지시 제2호)

1부. 끝.

수신처 : 가(01 ~ 04),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헌법위원회사무국장.

총 100

국무총리지시제 2 호 720-4436 : 1987. 7. 27.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 강화 지시

금번 태풍과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복구,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 증양 행정기관은 물론 소속 기관과 산하단체에도 시달하여 공직자의 비상근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목 적 :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피로 예방과
 복구 대책 수립. 추진
 - 운영기간 : 수재와 태풍 피해에 대한 응 phó 조치
 완료 시 까지
 - 인원현상 : 부처관단,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원
 - 근무장소 : 상황실등 일정장소 지정
 - 소속. 산하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자체관단.
 인원

2. 공무원 특별휴가 우선 실시

- 대상 : 수해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
 - 기관 : 기관장 판단, 응급복구지원에 필요한
기관

3. 공무원 하계휴가를 시 익제

- 응급 복구 완료 시 까지 -
 - 수해복구와 직접 관련된 부처는 전직원 휴가중 지
 - 기타부처는 과장급 이상 휴가중 지, 일반직원은 소속 기관장 판단하에 실시

4. 당직근무 강화

- 청사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경계강화
 -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체크. 끝.

국무총리

수신처 가 (05~53, 60, 61), 나(01).